

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 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다자녀 가정 및 한부모 가정에 사용료 감면 혜택 추가를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체육·여가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다자녀 가정 및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용료 감면 내용 신설(안 별표3)

-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로 되어 있고,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, 「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체육시설 이용료(제9조 관련)

구 분	기 준		평일	토·일·공휴일
금오테니스장	실외	주간	4,000원	5,000원
		조기·야간	6,000원	7,000원
	실내		12,000원	15,000원
구포동 생활체육공원 [테니스(소프트)장]	실외	주간	4,000원	5,000원
		조기·야간	6,000원	7,000원
	실내		12,000원	15,000원

- 이용료 산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.
- 이용시간은 1면, 1회, 1시간을 적용한다.
 - 조기(06:00~09:00), 주간(09:00~18:00), 야간(18:00~22:00)을 적용한다.
(이 경우 조기·야간은 조명사용료를 포함한다)
-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서류 제출 시 이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기준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은 하나만 적용한다.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 1. 유공자와 그 배우자
 2. 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
 3. 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 보조자 1명
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 1. 의상자(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 의상자의 활동 보조자 1명 포함)
 2.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
 3.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
 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 1.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활동 보조자 1명 포함)
 2.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-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로 되어 있고,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
(구미시 다자녀 가정의 감면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(발급 3개월 미만)를 제시하여야 한다.)
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(한부모가족 증명서(발급 3개월 미만)를 제시하여야 한다.)

관계법령

□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5. 23.>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12. 5. 23.>

□ 「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」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인구정책”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·대응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수립·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정책을 말한다.

가.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

나. 일자리·문화·교육·복지·주택·교통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

다.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

2. “다자녀가정”이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, 19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

제6조(인구정책사업)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결혼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
2. 일·생활균형 및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
3.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
4. 노인의 여가·문화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·단체 또는 개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소 관 부 서		체육진흥과
입 안 자	과 장	지 대 근
	담 당	강 신 해
	담 당 자	김 중 석 (480-5023)